

장애등급 재결정에 따른 부당이득금 징수기준

◇ 최초 장애등급 결정 이후 사정 변경 등으로 직권취소(변경처분)에 따른 장애급여 차액 환수 관련 기준을 제시

1 추진 배경

- (소송 패소) 부정수급 조사시 최초 장애등급 결정 하자* 등을 이유로 직권취소 후 장애등급 재결정과 등급 차액 부당이득 반환 결정 처분
 - 관련하여 장애급여 차액에 대한 소급징수에 대해 과도한 처분이라는 이유로 '부당이득 반환 결정 처분 대부분 패소(증가 추세)

*내용: 산재 조사시 미발견 또는 업무 미흡, 과다 등급 결정 등

- (업무개선) 불필요한 부당이득 징수 방지 → 소송 감소 및 행정의 신뢰성 제고
(단위: 건, %)

구분	재결정처분 (원액)	행정소송				패소율
		소계	승소**	일부승소	패소	
합계	140(92)	32	7	13	12	37.5
'16년	41(23)	10	2	5	3	30.0
'17년	56(30)	5	3	1	1	20.0
'18년	43(39)	17	2	7	8	47.1

* (소송쟁점) ①당사자의 귀책사유(고의·중과실) 유무 ②원상회복의 용이성(당사자의 납부능력 등) ③공단의 처분 당시 잘못(과실) 여부 등

* 장애재결정과 장애재결정에 따른 부당이득 배액징수인 경우는 승소, 장애재결정에 따른 부당이득 원액징수(소급분)인 경우에는 전부 패소

2 관련 법령 및 판례

- 산재보험법 제84조(부당이득의 징수), 제85조(징수금의 징수) 등
- 부당이득 징수업무 처리규정 제3조 및 제4조(부당이득 징수 등)
- 부정수급 조사업무 처리규정 제10조(조사결과의 처리 및 보고)

* (부당이득 징수) 거짓·부정한 방법의 보험급여 수령은 2배 징수, 부당한 보험급여 수령은 원액 징수

○ (판례) 최초 결정시 고의·중과실 등 귀책사유 여부에 따라 결정

법원 판례	
승소 사례(서울행정법원 2017구단51597)	패소 사례(서울행정법원 2017구단55889)
최초 장애등급 결정의 하자가 사실은폐의 신청행위 등 원고의 고의·중과실에 의한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므로 직권취소 후 장애재결정 및 부당이득 배액징수처분은 모두 적법	현재 원고의 장애상태가 최초 장애등급 결정 당시보다 호전되었다 하더라도 최초 장애등급 결정 당시의 하자를 인정하기 어려워 장애등급 재결정은 위법하고, 또한 원고의 고의·중과실의 귀책사유 등이 인정되지 않아 부당이득 원액징수처분도 위법

3 적용 기준

○ (기본 원칙) 판례 취지를 고려하여 최초 장애등급 결정시 당사자의 귀책사유(고의·중과실) 여부에 따라 업무처리

- 최초 장애등급 결정시 서류조작 등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최초 장애등급과 재결정된 장애등급의 급여차액을 소급징수(배액)

* 부정수급에 따른 부당이득 징수이므로 최초 장애등급 결정에 따라 지급된 보험급여 지급부터 차액에 대한 배액징수(형사고발 등 조치 병행)

- 부정수급 조사결과 최초 장애등급 결정 당시의 하자는 인정되나, 허위·부당청구 등 당사자의 귀책사유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에는 장애등급 재결정 처분(하향조정)은 유지하되, 부당이득 소급 징수결정은 하지 않음

* 부정수급이나 부당이득이 아니므로 소급징수하지 않고, 장애등급 재결정일 이후부터 변경된 장애등급으로 급여 지급

○ 다만, 최초 장애등급 결정할 때에 허위·부당청구 등 당사자의 고의·중과실에 대한 철저한 확인 필요

4 행정사항: 시행일 이후 장애등급 재결정 뿐만 아니라 시행일 현재 동일내용으로 진행(소송 포함)되고 있는 건에 대해서도 적용

* 부당이득 원액징수는 하지 않더라도 신고제도 활성화 방안 별도 마련(신고포상금제도 등)

참고

각종 법률 내용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법 제84조(부당이득의 징수)

① 공단은 보험급여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제1호의 경우에는 그 급여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단이 제90조제2항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등에 청구하여 받은 금액은 징수할 금액에서 제외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
2. 수급권자 또는 수급권이 있었던 자가 제11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부당하게 보험급여를 지급받은 경우
3. 그 밖에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제1호의 경우 보험급여의 지급이 보험가입자·산재보험 의료기관 또는 직업훈련기관의 거짓된 신고, 진단 또는 증명으로 인한 것이면 그 보험가입자·산재보험 의료기관 또는 직업훈련기관도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③ 공단은 산재보험 의료기관이나 제46조제1항에 따른 약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진료비나 약제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 진료비나 약제비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제44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그 진료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나 약제비를 지급받은 경우
2. 제40조제5항 또는 제91조의9제3항에 따른 요양급여의 산정 기준 및 제77조제2항에 따른 조치비용 산정 기준을 위반하여 부당하게 진료비나 약제비를 지급받은 경우
3. 그 밖에 진료비나 약제비를 잘못 지급받은 경우

④ 제1항 및 제3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공단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 진료비 또는 약제비를 받은 자(제2항에 따라 연대책임을 지는 자를 포함한다)가 부정수급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기 전에 부정수급 사실을 자진 신고한 경우에는 그 보험급여액, 진료비 또는 약제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징수를 면제할 수 있다.

법 제85조(징수금의 징수)

제39조제2항에 따른 보험급여액의 징수, 제78조에 따른 장애특별급여액의 징수, 제79조에 따른 유족특별급여액의 징수 및 제84조에 따른 부당이득의 징수에 관하여는 보험료 징수법 제27조, 제28조, 제29조, 제30조, 제32조, 제39조, 제41조 및 제42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건강보험공단"은 "공단"으로 본다.

시행령 제79조(보험급여 지급 제한의 범위 등)

① 공단은 보험급여 수급권자가 [법 제83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면 보험급여의 지급을 제한하기로 결정한 날 이후에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휴업급여 또는 상병보상연금의 20일분(지급사유가 발생한 기간이 20일 미만이면 그 기간 해당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하지 않는다.

② 공단은 장애보상연금 또는 진폐보상연금 수급권자가 [법 제83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면 다음 각 호에 따라 장애급여를 지급한다. <개정 2010. 11. 15.>

1. 장애상태가 종전의 장애등급등보다 심해진 경우에도 종전의 장애등급등에 해당하는 장애보상연금 또는 진폐보상연금 지급
2. 장애상태가 종전의 장애등급등보다 호전되었음이 의학적 소견 등으로 확인되는 경우로서 재판정 전에 장애상태를 악화시킨 경우에는 그 호전된 장애등급등에 해당하는 장애급여 또는 진폐보상연금 지급

부당이득 징수업무 처리규정 제3조(부당이득 징수)

① 소속기관장은 보험급여 지급결정에 하자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직권으로 당초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고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가 있는 경우 법 제84조에 따라 부당이득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② 소속기관장은 보험급여 수급권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보험급여를 지급 받은 경우에는 그 보험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1. 각종 보험급여 청구서의 신고사항에 대하여 단순 기재누락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
2. 수급권 변경·소멸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
3. 그 밖에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

③ 소속기관장은 보험급여 수급권자가 법 제84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면 보험급여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징수하여야 하며, 유형별 판단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보험급여 수급권자(연대책임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 이전에 부정수급 사실을 자진 신고 한 경우에는 신고한 자에 대하여 그 보험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한다.<개정 2018.12.13.>

1. 이사장이 부정수급 기획조사 계획을 수립한 날(내부결재일) <신설 2018.12.13.>
2. 소속기관장이 인지사건에 대해 본부에 보고한 날 <신설 2018.12.13.>
3. 소속기관장이 부정수급 여부에 대해 조사를 시작한 날 <신설 2018.12.13.>

④ 소속기관장은 부정수급자 또는 연대책임자가 자진신고를 서면으로 하지 않는 경우에는 별지 제30호 서식에 따른 부정수급 자진신고 접수내역을 전산으로 입력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13.>

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부당이득으로 징수하는 때에는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이 장해보상연금 선급금을 받은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부당이득으로 징수할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당이득 징수 사유가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장해보상연금선급금의 100분의 98에 해당하는 금액
2. 부당이득 징수 사유가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 장해보상연금선급금의 100분의 198에 해당하는 금액

⑥ 부당이득 징수 결정 당시 소멸시효가 완성된 부당이득은 법 제84조에 따라 부당이득으로 징수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지·독촉 등 체납처분 절차는 생략하여야 한다.

제4조(부당이득 예고통지) ① 소속기관장은 제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부당이득으로 결정하려는 때에는 납부의무자에게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견제출 기한은 통지일부터 10일 이상 14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16.12.29.> <개정 2018.12.13.>

1. 처분의 제목
2. 부당이득 납부책임이 있는 사람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3. 부당이득 결정의 원인이 되는 사실과 부당이득 징수금 및 법적 근거
4. 제3호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내용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5. 의견제출기관의 명칭과 주소
6. 의견제출기한
7. 그 밖에 부당이득 결정에 관한 사항

② 소속기관장은 납부의무자가 제1항제6호에 따른 의견제출 기한까지 정당한 이유 없이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의견이 상당한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이득으로 결정하여야 한다.